「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경쟁력 있는 창업자의 구도심 진입을 지원하고, 상생점포의 시설 개선 및 상생임대 연계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지속가능한 상권기반 조성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다)「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라)「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2) 필 요 성

구도심 핵심상권의 빈 점포 증가와 기존 점포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신규 소상공인 유입과 기존 상권 유지를 위한 동시 대응 체계 마련 시급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구도심 내 신규창업자 및 상생건물주 모집·관리

(3) 창업 컨설팅 및 후속 사업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4) 사업 집행·정산 및 추진실적·성과 관리

라. 위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1년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00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1,500	1,200	75	225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28444(2026.9.30.)호

4. 부서의견

○ 구도심 리(RE):채움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4)「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구도심 빈 점포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창업자와 상생 임대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 신규창업자 지원과 상생건물주 지원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실 해소와 이탈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15억 원(시비)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신규 사업인 만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